제 40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성복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0년06월1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전**	전** 1954-12-25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	재등록
이**	이** 1958-03-15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	재등록
박**	박** 1958-04-16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	재등록
안**	안** 1974-08-23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	재등록
이**	이** 1979-06-26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	재등록
강**	하가** 2010-10-25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	재등록
강**	하가** 2012-10-07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	재등록
강**	강** 1984-02-15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한유정 문의전화 : 031-324-8768)

2020년 06월 05일

성복동장 ㊞